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의 강원대학교 졸업에 관한 특례 규정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1일

강 원 대 학 교 총 장 인

●규칙 제2173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의 강원대학교 졸업에 관한 특례 규정 제정안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의 강원대학교 졸업에 관한 특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의 강원대학교 졸업에 관한 특례 규정

제정 2026. 8. 1. 규칙 제217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합 이전에 국립강릉원주대학교(이하 강릉원주대학교)
입학한 학생의 강원대학교 졸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이 규정은 다음 각 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1. 「국립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36147호) 부칙 제2조(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2026. 2. 27.)
2. 강원대학교 학칙 부칙 제2조(폐지되는 강릉원주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등
에 대한 경과조치, 2026. 3. 1.)

제3조(졸업자격인정) ① 강릉원주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종전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칙」과 「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적
용받는다. 다만, 「강원대학교 학칙」 제96조(졸업 및 학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강원대학교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이수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1.75 이상
 2. 「강원대학교 학칙」 제93조제1항에 따른 졸업 학점 이상 취득
 3. 교육과정에 따른 영역별 이수 학점 취득
 4.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서, 실기 발표, 졸업종합시험 등 소정 요건에 합격
- ② 제1항제3호의 영역별 이수 학점은 「강원대학교 학칙」 [별표 1]에 따른
강릉·원주캠퍼스 모집단위의 2026학년도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교
양·전공·자유선택 각 영역은 세부 이수 요건과 관계없이 해당 영역의 총
이수학점만 취득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4조(졸업 및 학위수여) ① 강릉원주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강원대학교로 졸업하
고자 하는 경우 졸업증서에 표기되는 대학·학과(부)·전공명 및 학위명은
「강원대학교 학칙」 [별표 6] ‘학부(학과) 및 전공별 학위수여표’에 따른다.
② 그 밖의 졸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2026. 8. 1. 규칙 21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대해서는 2028년 2월
졸업자까지 종전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출산
질병으로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휴학기간을 산입하여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개정 이유

- 대학 통합에 따라 통합 이전 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졸업 및 학위수여에 필요한 특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통합 이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입학생이 강원대학교로 학위를 수여 받기 위한 졸업자격 인정요건 규정(안 제3조)
- 강원대학교 학위수여 시 졸업증서의 대학·학과(부)·전공명 및 학위명 표기 기준 마련(안 제4조)
- 통합 이전 입학생의 원활한 학사 전환을 위해 일정 기간 종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졸업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적용특례 규정(부칙)

◇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립학교 설치령」, 「강원대학교 학칙」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합 의: 해당 없음
- 기 타: 해당 없음